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8. 16.>

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제16조제1항 관련)

사업의 종류	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	안전관리자의 수	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
1. 토사석 광업	상시근로자 50명 이상	1명 이상	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같은 표 제3호 ·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을 선임해야 한다.
2.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	상시근로자 500명 이상	2명 이상	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같은 표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호 · 제2호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)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3.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		
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			
5. 펠트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		
6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		
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		
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	
9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	
10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		
11. 1차 금속 제조업			
12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		
13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
14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
15. 전기장비 제조업			
16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
17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
18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	
19. 가구 제조업			
20. 기타 제품 제조업			
21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		
22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		

23.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			
24. 환경 정화 및 복원업			
25.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			
26. 발전업			
27. 운수 및 창고업			
28. 농업, 임업 및 어업	상시근로자 50명 이상	1명 이상	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같은 표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29.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	미만. 다만, 제37호의 사업(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)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.		다만, 제28호 및 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)을 선임해야 한다.
30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발전업은 제외한다)			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)			
32. 도매 및 소매업			
33. 숙박 및 음식점업			
34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			
35. 방송업	상시근로자 1명 이상	2명 이상	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같은 표 제7호·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을 선임해 되, 같은 표 제1호·제2호·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36. 우편 및 통신업			
37. 부동산업			
38. 임대업; 부동산 제외			
39. 연구개발업			
40. 사진처리업			
41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			
42.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			
43. 보건업			
44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		
45.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(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)			
46. 기타 개인 서비스업			
47. 공공행정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			

	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		
48.	교육서비스업 중 초등·중등·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협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		
49.	<p>49. 건설업</p> <p>공사금액 50억 원 이상(관계 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) 120 억원 미만(「건 설 산업 기본 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)</p>	1명 이상	<p>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</p>
	<p>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(「건 설 산업 기본 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) 800 억원 미만</p>		<p>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선임 해야 한다.</p>
	<p>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,500 억원 미만</p>	<p>2명 이상. 다 만,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 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과 공사 종료</p>	<p>별표 4 제1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10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선임하 되, 같은 표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</p>

	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(이하 “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.	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1,500 억원 이상 2,200 억원 미만	3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, 같은 표 제1호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(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) 자격을 취득한 사람(이하 “산업안전지도사 등”이라 한다)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2,200 억원 이상 3천 억원 미만	4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
공사금액 3천 억원 이상 3,900 억원 미만	5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	

	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.	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3,900 억원 이상 4,900 억원 미만	6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4,900 억원 이상 6천 억원 미만	7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6천 억원 이상 7,200 억원 미만	8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공사금액 7,200 억원 이상 8,500 억원 미만	9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.	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,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
공사금액 8,500 억원 이상 1조	10명 이상. 다만, 전체 공사	

원 미만	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.	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
1조원 이상	11명 이상[매 2천 억 원(2조 원) 이상부터는 매 3천 억 원)마다 1명씩 추가한다]. 다만,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(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) 이상으로 한다.	는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비고

1.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·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2.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